

다) 보수

- (1) 봉급: 병역휴직과 동일
- (2) 수당: 병역휴직과 동일

마. 유학휴직

- 1) 근거: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5호
- 2) 휴직사유: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
- 3) 휴직의 요건
 - 가) 휴직 대상: 남·여 교육공무원
 - 나) 유학 또는 연구·연수의 범위
 - (1)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
 - (2)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(자기비용에 의한 유학 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)
 - ※ 국비유학의 경우,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0조(특별연수) 및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7조의3(파견근무)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
 - ※ 외국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연수기관의 정의
 - 교육기관·연구기관: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·운영하거나(교육기관), 학문적 지식·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(연구기관)을 말함
 - 연수기관: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(기능을 포함한다)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. 사설학원에서 어학공부를 위한 휴직은 불가함
 -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, 정부기관 부설연구소, 교원연수원, 국제어학교육기관,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 시 허용

4) 휴직기간 및 횟수

- 가) 법정휴직기간: 3년 이내(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)

※ “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”의 의미

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,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

나) 휴직의 신청,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

- (1)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(예: 6월 또는 1년 6월)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,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
- (2) 연장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- 다) 휴직의 횟수: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,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%를 지급하고, 유학기간의 1/2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임